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7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등(윤호중의원안) ..	3

I. 개요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7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30.
-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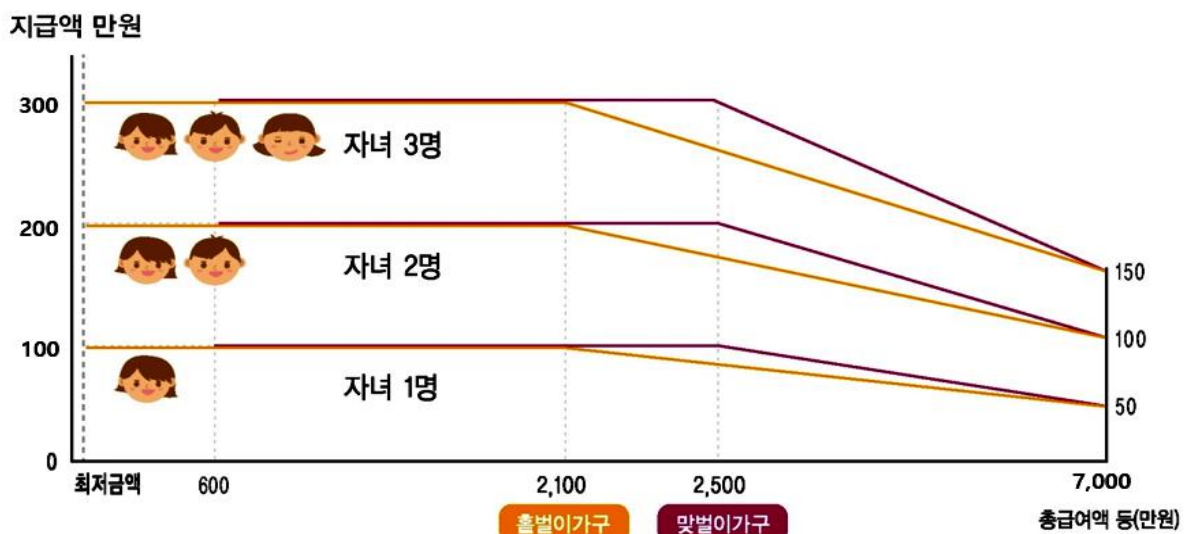
1.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등(윤호중의원안)

가. 자녀장려세제 개요

□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르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함.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자격요건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10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100만원)이 지급됨.

[현행법 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급액이 50~70만원으로 상향조정(종전 30~50만원)되었음.

또한, 2022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급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하였고, 2023년에는 제도 도입시부터 동일하게 유지했던 소득상한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지급액을 50~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자녀장려금 개정 연혁]

제·개정	'14		'16	'17	'18	'22	'23
지급	'15	'16	'17	'18	'18	'23	'24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소득자 추가		
가구원 구성	부양자녀가 있는 홀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 지급액	가구구성	총소득기준 (만원)	자녀1인당 지급액 (만원)	지급액 (만원)		총소득기준 (만원)	지급액 (만원)
	홀벌이	0~2,100	50	70	80	0~2,100	100
		2,100~4,000	30~50	50~70	50~80	2,100~7,000	50~100
	맞벌이	0~2,500	50	70	80	0~2,500	100
		2,500~4,000	30~50	50~70	50~80	2,500~7,000	50~100
	재산	1.4억원 미만 * 1억 초과시 50%만 지급		2억원	2억원 * 1.4억 초과시 50%만 지급	24억원 *1.7억 초과시 50%만 지급	
주택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	폐지				
기타	(제외) 당해연도 3월 기준 기초수급자				수급자 요건 폐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나. 검토의견

현행		윤호중의원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제100조의28 및 제100조의29) ○ 신청자격(제100조의28) <table><tr><th>가구원 구성</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홀벌이 가구</td><td>7천만원</td></tr><tr><td>맞벌이 가구</td><td>7천만원</td></tr></table> ○ 지급액(제100조의29) <table><tr><th>구분</th><th>총급여액</th><th>자녀장려금</th></tr><tr><td rowspan="2">홀벌이</td><td>~2,100만원</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tr><td>2,100 ~ 7,000만원</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td></tr><tr><td rowspan="2">맞벌이</td><td>~2,500만원</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tr><td>2,500 ~ 7,000만원</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4,500분의 50</td></tr></table>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홀벌이 가구	7천만원	맞벌이 가구	7천만원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홀벌이	~2,1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 ~ 7,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맞벌이	~2,5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 ~ 7,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4,5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 신청자격(제100조의28) <table><tr><th>가구원 구성</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홀벌이 가구</td><td>(현행과 같음)</td></tr><tr><td>맞벌이 가구</td><td>1억2천만원</td></tr></table> ○ 지급액(제100조의29) <table><tr><th>구분</th><th>총급여액</th><th>자녀장려금</th></tr><tr><td rowspan="2">홀벌이</td><td colspan="2">(현행과 같음)</td></tr><tr><td></td><td></td></tr><tr><td rowspan="2">맞벌이</td><td>~4,000만원</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tr><td>4,000 ~ 1억 2,000만원</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4,000만원) 8,000분의 50</td></tr></table>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홀벌이 가구	(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	1억2천만원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홀벌이	(현행과 같음)				맞벌이	~4,0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4,000 ~ 1억 2,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액등 - 4,000만원) 8,000분의 50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홀벌이 가구	7천만원																																								
맞벌이 가구	7천만원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홀벌이	~2,1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 ~ 7,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맞벌이	~2,5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 ~ 7,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4,500분의 50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홀벌이 가구	(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	1억2천만원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홀벌이	(현행과 같음)																																								
맞벌이	~4,0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4,000 ~ 1억 2,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액등 - 4,000만원) 8,000분의 50																																							

* 윤호중의원안 2024. 9. 30. 제출(의안번호 4473)

- ☐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에서 1억 2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최대 환급액수인 100만원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현행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첫째, 매년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¹⁾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소득한도 상향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최대지급액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대상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수도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7	1.05	0.98	0.92	0.84	0.81	0.78

자료: 통계청

둘째,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비 등 홀벌이 가구 대비 추가적인 양육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부부 중 한명이 불가피하게 휴직·퇴직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1)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평균 1.59명)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 2019년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설문조사에서도 “자녀장려금이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된 바 있음.(자료: 「2019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자녀장려세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

이러한 경제적 부담 및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결혼 기피 현상 및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가족실태조사 결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선정(25.2%)되는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양육지원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개정안과 같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실질적인 돌봄비용 지원 효과를 가져와 양육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성별·연령별)]

(단위: %)

구분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전체		5.1	15.7	10.2	25.2	9.3	17.1	11.2
성별	남성	6.1	17.7	11.3	20.9	10.4	18.7	8.6
	여성	4.2	13.7	9.1	29.3	8.3	15.5	13.7
연령별	30대 미만	6.9	19.7	12.9	26.1	8.0	15.4	7.5
	30대	6.2	21.0	14.5	24.9	6.7	15.0	9.5
	40대	5.4	19.1	10.3	23.0	9.5	17.3	12.4
	50대	5.5	14.9	9.2	24.9	9.7	19.0	12.0
	60대	4.4	12.2	8.5	27.1	10.4	17.5	12.7
	70세 이상	3.1	8.2	7.0	25.7	10.8	16.9	10.7

*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2024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2022년과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3년 세법개정 당시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의 상승을 고려하여 소득상한금액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연이은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등이 이루어져 2023년(귀속연도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및 총 지급액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출산율 감소 등에 따라 매년 감소하던 조세지출액이 2023년 들어 증가하기 시작했고, 제도 확대에 따라 2024년에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급 가구	106	94	88	74	71	58	52	96
총 지급액 규모	5,637	4,917	7,543	6,457	6,060	4,966	5,035	9,720

주1. 귀속 연도별 최종 지급현황 (다만, 2023년은 기한 후 신청분 제외)

주2 귀속소득 연도 기준

자료 : 2022년 국세통계연보, 14-1-1

[자녀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감면액	7,543	6,471	6,080	4,977	5,028	10,810	9,900

주1: 소득 기준(귀속연도/지급연도) 및 실제지급액 차이 등에 따라 지급액과 조세감면액에 차이 발생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셋째, 서민·중산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2천만원인 맞벌이 가구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25년 기준 3인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6천만원이고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7,300만원인 점³⁾ 등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배에 달하는 고소득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 저출산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로 보임.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인가구 중위소득은 60,304,236원이고 4인가구 중위소득은 연 73,173,276원임.

문 의 처
02)6788-5154